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동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4일
한국방재협회장

1. 신청인

법인명	한성중공업(주) (대표 김홍철)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정미로 1092

2. 기술명 : 리테이너 프리క్షن 기능이 적용된 샤프트 드라이브 펌프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펌프의 모터 샤프트와 임펠러 사이에 위치하고, 임펠러와 인접한 곳에 장착한 리테이너 프리క్షن 기능이 적용된 샤프트 드라이브 펌프이다. 본 기술이 적용된 펌프는 진동 감소, 효율상승, 상승된 효율유지가 가능하며, 복합소재 적용 및 웨어링의 사용이 필요없어 마찰로 인한 고착방지가 가능하다. 이는 유체의 공급으로 냉각 유지되어온 펌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펌프

의 무부하 구동점검이 가능한 기술로 수중펌프, 입축펌프, 양흡입벌류트펌프, 펌프일체형수문에 적용되어 재난 상황을 대처 할 수 있는 재난안전의 신기술이다.

4. 기술범위

- 리테이너 프리션 적용으로 펌프의 효율이 향상되며 유지하는 기술.
- 리테이너 프리션 적용으로 펌프의 내구성이 향상된 기술.
- 축을 직접 지지하는 리테이너 프리션의 자기유회환 기능으로 유체의 공급없이 펌프의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기술.

5.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한 사항은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방재협회(02-6952-9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가. 이해관계인 의견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나. 이해관계인 서약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의 붙임1 서식)
- 다. 신청서 열람 요청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라. '가'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 자료

7. 제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02-6952-9388)

※ 이해관계인 의견 반려 사항

「재난안전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및 3항에 의거,

-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 인정되지 않음.
- 이해관계인의 기술이 타인의 기술로써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
- 기술 도용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 요청한 경우
-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